

소 송 위 임 장	
사 건	손해배상(의) 청구의 소
당 사 자	원 고 홍 길 동외 1 피 고 임 껍 정
위 사건에 관하여 法務法人 韓半島 (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-16. 동현빌딩 7층)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.	
(1) 일체의 소송행위 (2) 반소의 제기 및 그 취하에 관한 권한 (3)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(4) 소의 취하 (5) 청구의 포기 및 인낙, 참가에 의한 탈퇴 (6) 복대리인의 선임 (7) 목적물의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 (8) 공탁물의 납부,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(9) 담보권행사 최고신청, 담보취소신청 및 동 신청에 대한 동의,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(10) 항소 및 상고의 제기 또는 그 취하에 관한 권한 (11) 소송비용확정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(12) 가압류,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등 취소신청 및 이에 대한 응소 (13) 권리행사최고신청 (14) 제소명령 신청 (15) 지급명령이의신청에 의한 본안소송 (16) 가압류, 가처분, 강제집행에 관련된 일체의 신청 (17) 형사고소	
위 사항을 위임함. 2008. 1. 위 임 인 임 껍 정 주 소 충남 논산시 논산읍 논산리 1번지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	



공중인가 韓 半 島
법무법인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

<별지>

위 임 인

1. 임 껍 정

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읍 논산리 1번지



공증인가 韓半島
법무법인

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9-16 동현빌딩 7층
TEL : (02) 591-8787 FAX : (02) 594-6003